
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공고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(재)지정 공고합니다.

2026년 3월 12일

광진구청장

1.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: 1개소

○ 신속통합기획(주택 재개발) 예정지 : 1개소(105,957㎡)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05,957	
서울특별시	광진구	구의동 46 일대	105,957.0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
○ 지정기간 : 2026년 3월 17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

2.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: 2개소

○ 신속통합기획(주택 재개발) 예정지 : 2개소(139,130㎡)

대상지역			면적(㎡)	비 고
합 계			122,195	
서울특별시	광진구	중곡동 254-15 일대	81,343.9	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
		자양동 227-147 일대	40,851.1	

○ 지정기간 : 2026년 4월 4일부터 2027년 4월 3일까지

3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

용 도 지 역		면 적
도시지역	주거지역	6㎡ 초과
	상업지역	15㎡ 초과
	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	6㎡ 초과

4. 공고기간 : 2026. 3. 12. ~ 2026. 3. 26.(15일간)

5.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면 : 붙임1 및 붙임2 참조

※ 토지e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지번별 허가구역 해당 여부 확인 가능

6. 공람(열람)장소: 광진구청 홈페이지,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

※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진구청 부동산정보과
(☎02-450-7764)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붙임 1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지정

1. 광진구 구의동 46 일대



붙임 2

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도면: 재지정

1. 광진구 중곡동 254-15 일대



2. 광진구 자양동 227-147 일대

